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 .

제안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디자인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,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둠(안 115조제7항·제8항 및 부칙 제2조).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5조제7항 중 “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”를 “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”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”으로, “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”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략)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u>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u> ⑧ <u>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1. ~ 8. (생략)	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.</u> ⑧ <u>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-----</u> ----- <u>-----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 부칙	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u> ⑧ <u>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 부칙

<u>제2조(손해배상액 산</u> <u>정에 관한 적용례)</u> <u>제115조제7항 및 제</u> <u>8항의 개정규정은</u> <u>이 법 시행 이후 제1</u> <u>15조에 따라 손해배</u> <u>상이 청구된 경우부</u> <u>터 적용한다.</u>	<u>제2조(손해배상책임에</u> <u>관한 적용례) 제115</u> <u>조제7항의 개정규정</u> <u>은 이 법 시행 이후</u> <u>발생하는 위반행위</u> <u>부터 적용한다.</u>
--	---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 : 김동아 · 김남근 · 민병덕
최기상 · 김우영 · 백승아
박홍배 · 김용민 · 김현정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, 창작성,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·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·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,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115조제7항 및

제8항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,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둠(안 115조제7항·제8항 및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5조제7항 중 “3배”를 “5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생 략)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<u>3배</u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⑧ (생 략)	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배</u> ----- -----. ⑧ (현행과 같음)